

2022년도 제1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8급 간호) 계획 공고

2022년도 제1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8급 간호)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8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103명

계 급	직 렬(직 류)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8급	간 호(간 호)	103명	포항15, 경주2, 김천4, 안동3, 영주6, 영천3, 상주4, 문경9, 경산1, 군위6, 의성4, 청송3, 영양8, 영덕1, 청도8, 고령2, 성주6, 예천3, 봉화5, 울진8, 울릉2

2 시험과목

계 급	직 렬(직 류)	시 험 과 목
8급	간 호(간 호)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1)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택일형(문항당 1분 기준)
- 2)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3)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및 제66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기준일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2) 거주지 제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3.1.」 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3) 응시연령

계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8급	18세 이상	2004. 12. 31. 이전 출생자

나. 자격(면허)증 제한(기준일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시험명	계 급	직렬(직류)	해당 자격(면허)증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급	간 호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응시 출 력	구 분	시 험 장 소 고	시 험 일 자	합 격 자 발 표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2022. 2. 21. ~ 2. 25. (취소마감일 : 2. 28.)	4. 5.이후	필기시험	4. 5.	4. 30.	5. 12.
			면접시험	5. 12.	5. 23. ~ 5. 24.	5. 31.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s://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원서접수센터(☎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단,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 3) 응시수수료(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 3.5cm × 4.5cm (해상도 100dpi 이상)의 상반신 사진으로, 응시자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배경사진 등은 사용불가)

나. 접수 시 유의사항

- 1)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1개의 임용예정기관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된 후 임용됩니다.
- 2)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15개 시·도 중복접수 제한)
- 3)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를 경상북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우편 제출하여야 하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편의지원신청은 원서접수 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하며, 별도의 신청서 제출은 필요 없음
- 4) 접수기간에는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5)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6)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기간에 인터넷원서 접수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 상 :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다만,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1·2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性)을 추가 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2)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3) 취업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2)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3)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시·군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나'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10% 또는 5%)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5% 또는 3%)은 1개만 적용합니다.

2)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보훈번호 / 의사상자 등은 가산비율·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9 전출제한 임용예정기관

가. 5년 전출제한 :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나. 3년 전출제한 : 그 외 임용예정기관

※ 전출제한은 임용예정기관에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필기시험 시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하는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바.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사.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하며, 시험문제는 공개합니다.
- 아.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s://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자. 기타 시험관련 사항은 경상북도 인사과 인재채용팀(☎054-880-4583~7),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s://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